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하고,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하며, 향후 2년 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에 따른 납입방법과 안분기준을 신설하고, 가산금과 증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충당에 대한 가산금 표현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할 때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징수금액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보완 등(안 제18조제6항 신설)

나.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 시 주택 수 제외(안 제28조의4)

- 다.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법인장부 작성방식 등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 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 정비(안 제38조의3, 제81조의2 등)
- 마.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마련 등(안 제69조의2 신설)
- 바.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안 제70조의2)
- 사.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조문 정비(안 제72조)
- 아.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 현행화(안 제75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 자.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현행화(안 제13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2. 20. ~ 3. 11.) 진행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납세의 무자 외의 자로서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자를 말한다.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제6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4제3항(중전의 제2항),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 다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부동산을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격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이하인 부동산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부동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부동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 무기간에 같은 조 제4항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격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부동산

9.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라 한다)중에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경우(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보관 대상 장부의 종류 등)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말한다.

1. 주주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정한다)
2. 법인의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소재지, 면적, 분양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자의 명부 및 증거서류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중전의 제38조의2)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안분한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부터 7일 이내에”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2조 전단 중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을 “담배소비세액”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81조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2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징수세액(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세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수 제외한 유효기간) 영 제28조의4제6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취득세 세율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영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영 제28조의4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각 시·군·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군·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frac{\text{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 \times \frac{\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군·구별 안분액

총액	807,347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81,31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477
중구	331
용산구	1,740
성동구	2,688
광진구	3,343
동대문구	4,227
중랑구	4,522
성북구	5,137
강북구	4,622
도봉구	4,502
노원구	6,003
은평구	5,009
서대문구	3,53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마포구	2,561
양천구	3,657
강서구	4,523
구로구	4,320
금천구	3,192
영등포구	2,205
동작구	3,524
관악구	4,937
서초구	188
강남구	0
송파구	1,310
강동구	3,770

□ 부산광역시 (계: 50,31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191
서구	3,126
동구	2,853
영도구	3,60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해운대구	2,021
사하구	4,671
금정구	3,746
강서구	1,811

부산진구	3,202
동래구	3,002
남구	3,261
북구	4,719

연제구	3,071
수영구	2,885
사상구	3,120
기장군	3,026

□ 대구광역시 (계: 30,38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180
동구	4,213
서구	3,594
남구	4,386
북구	4,59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성구	2,198
달서구	4,398
달성군	3,660
군위군	1,164

□ 인천광역시 (계: 17,10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652
동구	1,961
미추홀구	2,950
연수구	1,187
남동구	2,722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부평구	2,984
계양구	2,603
서구	1,349
강화군	442
옹진군	254

□ 광주광역시 (계: 22,11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081
서구	4,049
남구	4,11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6,183
광산구	4,684

□ 대전광역시 (계: 21,81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5,517
중구	5,105
서구	4,94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유성구	1,874
대덕구	4,369

□ 울산광역시 (계: 17,64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167
남구	3,163
동구	3,20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3,218
울주군	3,892

□ 경기도 (계: 166,82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10,679
성남시	7,638
의정부시	5,289
안양시	5,260
부천시	7,627
광명시	3,908
평택시	6,502
동두천시	3,074
안산시	6,867
고양시	10,145
과천시	2,613
구리시	3,502
남양주시	7,643
오산시	3,675
시흥시	5,849
군포시	3,49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의왕시	2,395
하남시	3,312
용인시	9,357
파주시	6,525
이천시	4,914
안성시	4,082
김포시	5,432
화성시	8,456
광주시	4,923
양주시	4,259
포천시	4,144
여주시	3,921
연천군	3,726
가평군	3,458
양평군	4,155

□ 강원특별자치도 (계: 35,23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4,846
원주시	6,151
강릉시	4,437
동해시	1,766
태백시	1,200
속초시	1,973
삼척시	1,508
홍천군	1,855
횡성군	1,37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영월군	1,158
평창군	1,385
정선군	1,095
철원군	1,228
화천군	953
양구군	913
인제군	1,116
고성군	1,056
양양군	1,228

□ 충청북도 (계: 49,67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9,305
충주시	5,729
제천시	4,125
보은군	2,344
옥천군	2,487
영동군	2,46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증평군	1,915
진천군	3,164
괴산군	2,423
음성군	3,554
단양군	2,165

□ 충청남도 (계: 59,30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8,370
공주시	2,865
보령시	2,714
아산시	9,346
서산시	4,928
논산시	3,146
계룡시	1,242
당진시	4,70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금산군	1,399
부여군	1,742
서천군	1,396
청양군	846
홍성군	2,740
예산군	2,162
태안군	1,713

□ 전북특별자치도 (계: 48,74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12,926
군산시	6,320
익산시	5,937
정읍시	3,093
남원시	2,607
김제시	2,687
완주군	3,29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진안군	1,573
무주군	1,514
장수군	1,454
임실군	1,595
순창군	1,621
고창군	2,078
부안군	2,050

□ 전라남도 (계: 39,21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3,367
여수시	4,649
순천시	4,823
나주시	2,197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장흥군	1,060
강진군	1,027
해남군	1,733
영암군	1,381

광양시	2,906
담양군	1,250
곡성군	946
구례군	894
고흥군	1,405
보성군	1,103
화순군	1,416

무안군	1,776
함평군	1,104
영광군	1,230
장성군	1,259
완도군	1,200
진도군	969
신안군	1,515

□ 경상북도 (계: 64,56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9,022
경주시	5,830
김천시	3,228
안동시	3,471
구미시	7,439
영주시	2,525
영천시	2,656
상주시	2,489
문경시	2,085
경산시	5,276
의성군	1,75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송군	1,336
영양군	1,193
영덕군	1,508
청도군	1,670
고령군	1,393
성주군	1,668
칠곡군	2,777
예천군	1,819
봉화군	1,451
울진군	2,986
울릉군	987

□ 경상남도 (계: 103,08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24,658
진주시	8,546
통영시	4,030
사천시	3,979
김해시	13,401
밀양시	4,268
거제시	6,443
양산시	9,308
의령군	2,38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함안군	3,381
창녕군	3,041
고성군	2,897
남해군	2,742
하동군	2,732
산청군	2,670
함양군	2,628
거창군	3,134
합천군	2,845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2.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139,684백만원
----	------------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5,981
부산광역시	10,431
대구광역시	7,443
인천광역시	4,231
광주광역시	4,627
대전광역시	4,741
울산광역시	3,616
세종특별자치시	1,146
경기도	20,235

교육청	금액(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4,698
충청북도	4,750
충청남도	6,431
전북특별자치도	5,234
전라남도	5,228
경상북도	7,801
경상남도	10,172
제주특별자치도	2,919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각 시·군·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군·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로 본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2. 시·군·구별 안분액

총액	560,267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55,51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008
중구	226
용산구	1,188
성동구	1,835
광진구	2,282
동대문구	2,886
중랑구	3,087
성북구	3,507
강북구	3,155
도봉구	3,074
노원구	4,099
은평구	3,420
서대문구	2,41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마포구	1,748
양천구	2,497
강서구	3,088
구로구	2,950
금천구	2,180
영등포구	1,505
동작구	2,406
관악구	3,371
서초구	128
강남구	0
송파구	895
강동구	2,574

□ 부산광역시 (계: 34,35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496
서구	2,134
동구	1,948
영도구	2,462
부산진구	2,18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해운대구	1,380
사하구	3,189
금정구	2,558
강서구	1,237
연제구	2,097

동래구	2,049
남구	2,227
북구	3,222

수영구	1,970
사상구	2,130
기장군	2,066

☐ 대구광역시 (계: 20,74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489
동구	2,877
서구	2,454
남구	2,995
북구	3,13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성구	1,500
달서구	3,003
달성군	2,499
군위군	795

☐ 인천광역시 (계: 11,67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45
동구	1,339
미추홀구	2,014
연수구	810
남동구	1,85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부평구	2,037
계양구	1,777
서구	921
강화군	302
옹진군	173

☐ 광주광역시 (계: 15,09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2,104
서구	2,764
남구	2,812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4,221
광산구	3,198

☐ 대전광역시 (계: 14,89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767
중구	3,485
서구	3,37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유성구	1,279
대덕구	2,983

☐ 울산광역시 (계: 12,00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831
남구	2,149
동구	2,177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2,186
울주군	2,657

☐ 세종특별자치시 (계: 5,870백만원)

□ 경기도 (계: 113,89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7,291
성남시	5,215
의정부시	3,611
안양시	3,591
부천시	5,207
광명시	2,668
평택시	4,439
동두천시	2,098
안산시	4,688
고양시	6,927
과천시	1,784
구리시	2,391
남양주시	5,218
오산시	2,509
시흥시	3,993
군포시	2,38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의왕시	1,635
하남시	2,261
용인시	6,388
파주시	4,455
이천시	3,355
안성시	2,787
김포시	3,708
화성시	5,773
광주시	3,361
양주시	2,908
포천시	2,829
여주시	2,677
연천군	2,544
가평군	2,361
양평군	2,837

□ 강원특별자치도 (계: 24,05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3,309
원주시	4,200
강릉시	3,029
동해시	1,206
태백시	819
속초시	1,347
삼척시	1,030
홍천군	1,267
횡성군	93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영월군	790
평창군	945
정선군	747
철원군	838
화천군	650
양구군	624
인제군	762
고성군	721
양양군	839

□ 충청북도 (계: 33,91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3,181
충주시	3,912
제천시	2,817
보은군	1,600
옥천군	1,698
영동군	1,68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증평군	1,307
진천군	2,160
괴산군	1,653
음성군	2,427
단양군	1,478

□ 충청남도 (계: 32,94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0,205
공주시	1,592
보령시	1,508
아산시	5,192
서산시	2,738
논산시	1,748
계룡시	690
당진시	2,61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금산군	777
부여군	968
서천군	775
청양군	470
홍성군	1,522
예산군	1,201
태안군	952

□ 전북특별자치도 (계: 33,28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8,825
군산시	4,315
익산시	4,053
정읍시	2,112
남원시	1,780
김제시	1,834
완주군	2,24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진안군	1,074
무주군	1,034
장수군	993
임실군	1,089
순창군	1,107
고창군	1,418
부안군	1,400

□ 전라남도 (계: 26,77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2,299
여수시	3,174
순천시	3,293
나주시	1,500
광양시	1,984
담양군	853
곡성군	646
구례군	610
고흥군	960
보성군	753
화순군	967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장흥군	723
강진군	701
해남군	1,184
영암군	943
무안군	1,213
함평군	754
영광군	840
장성군	860
완도군	819
진도군	661
신안군	1,034

□ 경상북도 (계: 44,07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6,160
경주시	3,981
김천시	2,204
안동시	2,370
구미시	5,079
영주시	1,724
영천시	1,813
상주시	1,699
문경시	1,424
경산시	3,602
의성군	1,19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송군	912
영양군	815
영덕군	1,029
청도군	1,140
고령군	951
성주군	1,139
칠곡군	1,896
예천군	1,242
봉화군	991
울진군	2,038
울릉군	674

□ 경상남도 (계: 70,39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16,290
진주시	5,885
통영시	2,816
사천시	2,675
김해시	9,525
밀양시	2,844
거제시	4,646
양산시	6,068
의령군	1,67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함안군	2,295
창녕군	2,091
고성군	1,992
남해군	1,901
하동군	1,950
산청군	1,823
함양군	1,781
거창군	2,175
합천군	1,964

□ 제주특별자치도 (계: 10,761백만원)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2.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95,368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24,566	강원특별자치도	3,208
부산광역시	7,121	충청북도	3,243
대구광역시	5,082	충청남도	4,391
인천광역시	2,889	전북특별자치도	3,573
광주광역시	3,159	전라남도	3,569
대전광역시	3,237	경상북도	5,326
울산광역시	2,469	경상남도	6,944
세종특별자치시	783	제주특별자치도	1,993
경기도	13,81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 ⑤ 삭제 <u><신설></u>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⑥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납세의무자 외의 자로서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자를 말한다.</u>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생략) <u><신설></u>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제6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u>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④ 제1항 및 제2항-----

-----.

⑤ 제1항 및 제2항-----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 6. (생략)

<신 설>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 다
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부동산을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신 설>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이하인 부
동산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
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
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
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신축 부동산은 제외
한다) 으로서 2024년 1월 10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여 임대주택으
로 등록(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
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
다)하는 부동산.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
간에 같은 조 제4항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된 경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부동산

<신 설>

<신 설>

9.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에서 “아파트”라 한다)중에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
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에
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인 아파트

제38조의2(보관 대상 장부의 종류
등)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
를 말한다.

1. 주주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세기본
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정한다)

2. 법인의 자본적 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
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가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소재지, 면적, 분양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
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
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자의
명부 및 증거서류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

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38조의3 (생략)

<신설>

채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제38조의4 (현행 제38조의3과 같음)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안분한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1항의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
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
는 그 담보물을 채납처분비, 담
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
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illegible]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② (생략)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④ ~ ⑥ (생략)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①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보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① -----

----- 징수세액-----

야 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7